

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

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
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**소득요건 폐지**

대학생 A는 용돈,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
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원 발생

* '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,030원 × 3시간 × 20일 × 12개월 = 720만원

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
등록금(연 600만원)을 납부하는 경우

현행

교육비 세액공제 불가(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*)

*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총급여 500만원) 이하

개정안

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
→ 연간 등록금 600만원 × 15%
= △90만원 세액공제

